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9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2.

발의자 : 김영진 · 허영 · 최종윤

임호선 · 유정주 · 윤후덕

유기홍 · 이학영 · 이정문

노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등을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 방향에 따라 「환경분쟁 조정법」과 「석면피해구제법」,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복잡하게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 개발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방향도 복잡·다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

기반이 필요함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, 환경분쟁 조정(調整)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43조제2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947호)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952호), 「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949호),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948호) 및 정부가 제출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66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시책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, 환경분쟁 조정(調整)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련하는 시책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피해 구제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3조(피해 구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의 시책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하여 「환경분쟁 조정 법」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 사, 환경분쟁 조정(調整) 및 구 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 록 마련되어야 한다.